

의안번호	2209072
의 퇴 인	정점식 의원
회 답 일	2025. 4. 22.
추계번호	25B1479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고, <u>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u>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 추가	의무규정
2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2. 후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 및 <u>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 방안</u> 5.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u>홍보방안(신설)</u> ※ 기본계획에 후계농어업인의 첨단장비 조작 등을 위한 교육 방안,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장려를 위한 홍보방안 추가	의무규정
3	안 제13조(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13조(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계농어업인의 효율적인 농어업 작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육성, 창업 등에 대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미대상 -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기본계획에도 후계농 어업인의 역량강화 및 교육·홍보 등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23~'27) ·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3~'27)															
3	안 제13조(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 제1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안 제13조(후계농어업인 세제지원 등) 제2항	미대상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법 제8조제3항1) 등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의 정착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경영교육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 중이며, 관련 예산도 편성·집행 되고 있는 상황임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5예산</th></tr> </thead> <tbody> <tr> <td>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td><td>(사업내용)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연계한 체계적 인 품목기술 및 창업교육 운영 (지원대상) 39세 이하 창업 초기 청년농</td><td>5,125</td></tr> <tr> <td>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td><td>(사업내용) 청년농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진단 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및 적정 투자 유도 (지원대상) 19~49세(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td><td>420</td></tr> <tr> <td>2040세대 역량향상 프로그램</td><td>(사업내용) 성장단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대상) 예비농, 청년농, 농업인 등</td><td>4,032</td></tr> <tr> <td>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지원</td><td>(사업내용) 수산업경영인의 어업 경영 안정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로 이자율에 대해 이차보 전(기준금리-대출금리) 지원 (지원대상) 수산업경영인(후계어업인 및 우수경 영인)</td><td>17,055</td></tr> </tbody> </table>	사업명	사업개요	'25예산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	(사업내용)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연계한 체계적 인 품목기술 및 창업교육 운영 (지원대상) 39세 이하 창업 초기 청년농	5,125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내용) 청년농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진단 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및 적정 투자 유도 (지원대상) 19~49세(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420	2040세대 역량향상 프로그램	(사업내용) 성장단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대상) 예비농, 청년농, 농업인 등	4,032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지원	(사업내용) 수산업경영인의 어업 경영 안정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로 이자율에 대해 이차보 전(기준금리-대출금리) 지원 (지원대상) 수산업경영인(후계어업인 및 우수경 영인)	17,055
사업명	사업개요	'25예산															
청년농CEO 양성과정 운영	(사업내용) 농업마이스터대학과 연계한 체계적 인 품목기술 및 창업교육 운영 (지원대상) 39세 이하 창업 초기 청년농	5,125															
청년농 창업투자 심층컨설팅	(사업내용) 청년농을 대상으로 기술전수 및 진단 을 통한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 및 적정 투자 유도 (지원대상) 19~49세(농업투자를 추진하였거나 계획 중인 자)	420															
2040세대 역량향상 프로그램	(사업내용) 성장단계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준 진단 및 맞춤형 교육, 멘토링 등 지원 (지원대상) 예비농, 청년농, 농업인 등	4,032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지원	(사업내용) 수산업경영인의 어업 경영 안정 및 활성화 등을 위해 국비로 이자율에 대해 이차보 전(기준금리-대출금리) 지원 (지원대상) 수산업경영인(후계어업인 및 우수경 영인)	17,055															

-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및 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이라 한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어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명	사업개요	'25예산
	수산업경영인 교육	(사업내용)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지원대상)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	226
	어업인기술보급	(사업내용) 어업인 등 소득증대,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기술·정보의 습득 등을 위한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 장비 등 지원 (지원대상)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등	1,392
	창업어가멘토링	(사업내용) 어업인후계자 및 귀어가 등 수산업 경영 경험이 부족한 신규인력 창업 시 기술·경영·교육 등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방문 지원 (지원대상)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5년 이내인 자 및 귀어 창업자금 지원자 등	1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 상세 사유

□ 후계농어업인에 대한 조세 감면(안 제13조제1항)

- 개정안은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에 따라 후계농어업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향후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할 감면 대상 및 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 － 현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01호)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농지·임야·어선·어업권 등 취득세 완화를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97호)이 각각 발의되어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25.예산
농림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 지급하여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도모	113,662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 은퇴, 이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장기임대지원함으로써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인력구조개선 기여	962,500
	선임대후매도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 희망 농지를 매입하여 최장 30년 동안 임대 후에 매도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마련 지원	19,250
	농지매매	전업농 육성 및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청년농 등에게 매도 지원	95,300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귀농귀촌 청년층의 주거보육 부담완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및 농촌 지속가능성 제고	30,800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스마트팜에 특화된 실습위주의 장기 전문교육을 위한 실습온실 조성 및 교육과정(20개월)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청년 인력 양성	8,000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농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간(4~6개월) 체류형 실습교육 지원	1,547
해양 수산부	수산계고교 특성화 지원	현장전문가 양성을 통한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 지원, 공통 및 자체 프로그램 운영, 교육실습장비 지원	2,776
	공동실습선건조	실습생 안전확보, 교육여건 개선 및 수산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1척 건조	8,600
	스마트양식실습장 조성	1차산업인 양식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해야 하는 농수산대학교 수산계열학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양식 실습장 조성	2,000
	청년창업어업인장학 금 지원	수산산업분야 청년인력 유입 및 정착구조 마련을 위해 대학 졸업 후 수산 분야 취·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132
	청년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청년 어업인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 유도 등을 위해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및 부지 기반 조성, 취·배수 시설, 순환여과식 양식생산시설 및 부대시설 등 양식단지 구축을 위한 시설 지원	5,000

소관부처	사업명	사업목적 및 내용	'25.예산
	어선청년임대사업	어선어업에 대한 진입장벽인 허가어선 구매비용 등 부담 완화로 청년어업인 신규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1,125
	청년어촌정착지원	청년인력의 어업창업과 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 자금을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촌 고령화 문제 해소	3,038
	청년바다마을	귀어 청년 등의 주거(30호 미만),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 원스톱 지원을 위한 주거단지 시설 사업 * 지원규모: 개소당 100억원 지원 - 연부율 : 1차년(20%), 2~3(40%)	3,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